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문금주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814

발의연월일: 2025. 6. 13.

발 의 자:문금주・이기헌・김문수

박홍근 · 김남근 · 조계원

이광희 • 양부남 • 윤준병

문대림 · 최민희 · 조인철

임호선 · 이병진 · 이원택

정일영 • 정진욱 • 박지원

송재봉 의원(19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세계화의 촉진 및 부가가치의 제고를 통하여 어업인의 소득증대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.

한편 한류의 영향 등으로 김 수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김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산식품으로 자리 잡았으며, 향후 이와 관련한 글로벌시장 규모도 확대 전망임.

그런데 김 생산 업체는 대다수가 소규모·영세 업체로서 연구·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투자 여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, 홍보·마케팅 부분에서도 역량이 미흡하여 김산업 진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이에 김산업을 체계적·종합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기관인 한국김산

업유통진흥공사 설립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의 부가가치 및 경쟁력을 제고하여 김산업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임(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3장의2(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8까지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장의2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

- 제23조의2(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의 설립) ① 김산업 진흥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를 설립한다.
 - 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.
 - ③ 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.
- 제23조의3(임원) ① 공사에는 임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 - 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.
 - 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.
- 제23조의4(사업)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
 - 1.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개발

- 2.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 향상 및 신제품의 연구ㆍ개발
- 3.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 기술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
- 4.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 소비 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
- 5.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·훈련
- 6.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
- 7.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할 수 있는 사업
- 8.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 제23조의5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사의 조 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제23조의6(감독)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 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하여 지도·감독한다.
 - 1. 제23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
 - 2.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
 - 3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

제5장(제28조 및 제29조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23조의7(비밀 유지의 의무) 공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3조의8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.

제5장 벌칙

제28조(벌칙) 제23조의7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제29조(과태료) 제23조의8을 위반하여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 <신 설></u>	제3장의2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
	<u>사</u>
<u><신 설></u>	제23조의2(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
	사의 설립) ① 김산업 진흥에
	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
	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유통진
	흥공사(이하 "공사"라 한다)를
	<u>설립한다.</u>
	②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.
	③ 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
	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
	<u>성립한다.</u>
<u><신 설></u>	제23조의3(임원) ① 공사에는 임
	원으로 사장을 포함한 9명 이
	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둔다.
	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
	사의 업무를 총괄한다.
	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
	에 따라 업무를 분장한다.
<u> <신 설></u>	제23조의4(사업) 공사는 다음 각
	호의 사업을 한다.
	1.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
	한 정책의 수립・개발

- 2. 김과 김가공품의 품질 향상

 및 신제품의 연구·개발
- 3. 김과 김가공품의 생산 기술

 개발 지원 및 품질관리
- 4.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 소비촉진 및 수출 확대에 관한 사항
- 5.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・훈련
- 6. 김과 김가공품의 국내외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
- 7. 다른 법령에 따라 공사가 <u>할</u> 수 있는 사업
- 8. 그 밖에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 또는 대행받은 사업
- 제23조의5(다른 법률과의 관계)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공 사의 조직 및 경영 등에 관한 사항은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다.
- 제23조의6(감독) 해양수산부장관 은 공사의 업무 중 다음 각 호 의 사항과 관련되는 업무에 대 하여 지도·감독한다.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신 설>

<u><신 설></u> <신 설>

- 1. 제23조의4제1호부터 제6호까 지의 사업
- 2. 법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위탁 또는 대행하도록 한 사업
- 3.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하 는 사항
- 제23조의7(비밀 유지의 의무) 공 사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 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 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 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제23조의8(유사명칭의 사용 금지) 이 법에 따른 공사가 아닌 자 는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또 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 지 못한다.

<u>제5장 벌칙</u>

제28조(벌칙) 제23조의7을 위반하 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 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<신 설>

제29조(과태료) 제23조의8을 위반 하여 한국김산업유통진흥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